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21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2월 9일

나. 발 의 자: 전승관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2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2. 20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스토킹이 폭행·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,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-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- 본 조례안은
  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전임.
- 주요 내용은
  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 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,
  -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실태조사, 예방 교육 및 홍보, 피해자 심리·법률상담 및 의료지원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  -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전승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3년 2월

발의자: 전승관·000(0인)

## 1. 제안이유

최근 스토킹이 폭행·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시행된 것에 맞추어,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라.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마.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### 3. 제정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####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2.9. ~ 2023.2.13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시책
3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5.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

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사업)**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스토킹범죄 실태조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2.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
3.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
4.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
5.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교육 및 홍보)**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,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·홍보 등 스토킹

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, 사법기관,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